[별지 제13호 서식] 보안인증 사후관리동의서

보안인증 사후관리동의서

제1조(목적) 본 문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증기관)과 _____(이하 인증취득인)간에 <u>클라우 드 서비스명</u>(IaaS/SaaS 표준등급/SaaS 간편등급/DaaS/하등급 등) 인증 효력 충족 및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후관리사항) 인증취득인은 아래 사후관리사항들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며, 인증기관은 필요시 추가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 1) 사후평가는 1년 단위로 실시한다.
- 2) 갱신평가는 인증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실시한다.
- 3) 클라우드 시스템의 증설 및 변경사항 발생 시 해당내용을 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4) 보완조치확약서가 있을 경우, 조치사항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3조(인증 취소) 인증기관은 인증취득인이 본 문서 제2조 사후관리사항들을 계획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인증 취소 안건을 인증위에 상정할 수 있다.

제4조(사후평가 수수료) 인증취득인은 정기(1년 단위)로 실시하는 사후평가에 대해 인증평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수료 금액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공표한「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정보보안 컨설팅 제경비와 기술료 산정 방식에 따른 평가·인증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제5조(인증 범위 및 홍보) 본 인증의 대상은 인증취득인의 "〇〇〇〇"(IaaS/SaaS 표준등급/SaaS 간편등급/DaaS/하등급 등)로써 인증취득인은 해당 범위에 한해 홍보가 가능하다. 범위 밖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받는 것처럼 홍보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인증기관 면책) 보안인증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100%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증취 득인은 인증을 취득한 이후에도 안전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다. 인증취득인의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된 사건, 사고, 침해사고로 부터 인증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0000년 00월 00일

(인증취득인) : *인증 취득기관명* 대표 O O O (인)

주 소 :

(인증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이 이 (인)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